

September 17, 2014

중국 「외국인 단독 소유 병원」 설립 허용

중국 「상무부」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2014. 7. 25. <외상독자병원 시범 업무 실시에 대한 통지>(이하 “본 규정”)를 시행하여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7개 지역(이하 “7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신규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 하는 것을 허용(이하 “외상독자병원 허용”)하였습니다.¹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병원의 지분을 70%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병원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중국인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 중국인 투자자와 공동투자를 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공동투자 의무 때문에 그 동안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인 파트너에게 휘둘리다가 기술, 장비 및 인원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도 단독으로 중국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450조원 규모의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특히, (i) 중국인들의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ii) 한국 의료 수준의 중국에 대한 우위성, (iii) 위 7개 지역 모두 한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한국 투자자는 본 규정의 시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외상독자병원을 소유·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2. 의료위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및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함.
3.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병원의 관리 이념, 관리 모델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4. 국제 선두 수준의 의학기술 및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5. 현지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 측면의 부족함을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어야 함.

1. 단, 홍콩, 마카오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인 투자자가 중의학(한의학) 계통(中医类)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2015년 중국 의료시장의 규모는 약 450조원이 될 것이라고 하며, 지난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의료시장을 1,4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위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거나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규정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상독자병원의 소유가 용이해질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세부 규정의 제정 내지는 실무례의 형성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최용원 파트너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
| ● 김남훈 변호사 | TEL. +82 2 316 1710 | E-Mail. nhkim@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